

# 「2023 공연유통협력 지원」 사업 공모 요강

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는 공연단체-공연장, 중앙-지역, 민간-국공립 등 간의 협력을 통한 공연예술 유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'2023 공연유통협력 지원' 사업 공모를 추진합니다.

새로운 기획 및 협력 구조를 기반으로 한 공연을 전국으로 유통확대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## □ 2023년 사업 추진 방향

### ① 중장기 협력적 공연유통 방식 지향

- (기본방향) 전국 공연관객의 예술적 경험 확장과 함께 공연시장도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중장기 협력적 공연유통 활성화 추진
- (유통) 지역 공연시장 활성화, 고객지향적 관객분석·마케팅 시도
- (협력) 제작과 유통 과정에서의 책임감 있는 협력 구조 지향

### ② 기존 작품을 바탕으로 전국 공연관객 확대, 마케팅 강화

- (대상 공연) 장기적 전국유통이 가능한 기존 공연작품을 활용한 공연, 단, 단순 재공연 형태보다는 지역 등 조건별 기획력 발휘 필요
- (유료티켓) 전국적 건강한 공연시장 조성을 위해 '유료티켓 정책 활용' 필수,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개별 판매 데이터 공개
- (마케팅) 유료관객 모객을 위한 보다 적극적 마케팅 적용·실행 기회

### ③ 프로젝트 책임자·기획자의 기획력·협력조성 등 역량 중요

- (프로젝트 책임자) 해당 공연별 프로젝트 책임자(C.P)를 중심으로 기획·제작·유통 과정의 창의적 기획, 다양한 역할의 협력 조성
- (차세대 기획인력) 각 프로젝트별 차세대 기획인력(2인) 참여로 전국공연유통 현장경험·역량강화 기회 제공 등 기획자 동반성장 도모

## □ 공모개요

- (공모명) 2023 공연유통협력 지원
- (공모방향) 공연기획자·단체·공연장 등의 협력을 통한 전국 공연유통 확대, 기획·마케팅을 강화하여 전국 유료관객 개발·확대로 공연시장 활성화
- (지원기간) ①1개년 '23년 1월~12월 / ②2개년 '23년 1월~'24년 12월
  - \* 1개년과 2개년으로 구분하여 공모 신청 및 심의 진행
- (지원대상) 민간 공연단체·기획제작사, 민간공연장
- (지원내용) 공연 제작·유통비
- (지원규모) 1개년, 2개년 건별 최소 1억원~최대 10억원 지원 가능\*
  - \* '23년 12월 국회 정부예산 확정액에 따라 총 지원 규모 변동 가능
  - \* 공연 규모·횟수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, 지원신청 보조금액을 전부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
  - \* 총사업비(자부담금+보조금)의 최소 10~50%까지 자부담금으로 책정 필수
- (지원장르) 연극, 뮤지컬, 음악, 무용, 전통, 복합장르(다원 등)
  - \* 공연의 주된 장르가 대중음악인 경우 제외

## □ 공모 세부 내용

- (신청주체) 민간 공연단체, 기획·제작사, 민간공연장
  - \* 국내·외에서 최근 3년간 2건 이상 공연 발표 실적이 있는 민간공연단체·법인·기획제작사(단, 일시적 공연권 보유로 유통·배급이 주사업인 경우 신청 불가)
  - \* 민간공연장 : 등록공연장 중 단순대관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장
  - \* 국공립공연단체·공연장·기관은 협력기관으로 참여 가능
- (신청대상사업) 기 창제작 작품을 활용하여 타단체·공연장과의 공동 제작·유통 협력을 기반으로, 전국 공연관객 개발·확대가 가능한 공연
- (작품) '22년 12월까지 국내에서 1회 이상 전막공연·발표된 기 창작작품
  - \* 유료화된 전막 트라이아웃(tryout) 공연, 전막 쇼케이스 공연은 발표된 기 창작작품으로 인정

- (공연최소조건) 연내 최소 2개 지역\*, 총 6회 이상의 유료공연 필수 개최

- \* (지역구분) 17개 시도기준으로 구분 (서울, 인천, 경기, 강원, 대전, 세종, 충북, 충남, 광주, 전북, 전남, 대구, 부산, 울산, 경북, 경남, 제주)
- \* 최소 2개 지역의 조건
  - 서울 소재 단체일 경우, 최소 2개 지역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이어야 함
  - 서울 외 지역소재 단체일 경우, 최소 2개 지역에 서울지역 포함 가능
- \* (1개년) '23년 연내 최소 2개 지역, 총 6회 이상 유료공연 필수 개최
- (2개년) '23년, '24년 각각 연내 최소 2개 지역, 총 6회 이상 유료공연 필수 개최

- (티켓) 장당 최소 정가 10,000원 이상 책정하되, 온라인 티켓에매·발권 필수

- \* 공연 티켓 할인 정책은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
- \* 공연예술통합전산망(KOPIS)에서 '23년 티켓판매수·판매액 공개 예정

- (협력대상) 민간-민간/민간-국공립, 공연단체-공연장, 중앙-지역 등의 공동제작·공동유통 등을 위한 협력 필수

- (프로젝트 책임자) 협력 사업을 총괄 기획하고 운영하는 프로젝트 책임자를 반드시 결정하여, 지원신청서에 명시

- (공연 공간) 등록공연장을 포함한 전국의 공연 가능한 모든 공간\*

- \* 공연 공간은 공연작품과 기획 의도 등에 따라 모든 공간을 활용 가능
- \* 단, 공연장소가 등록공연장이 아닌 경우 '안전관리 계획'(자유양식) 제출 필수
- \* 기존 등록공연장 외 박물관, 미술관, 야외공연장, 유희공간 등과 관련된 목록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람

* 전국 등록공연장 리스트 <문체부>	* 전국 문예회관 리스트 <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>
<a href="http://www.mcst.go.kr">www.mcst.go.kr</a> - 주요정책>분야별정책>문화예술> '2021 등록공연장현황' 검색	<a href="http://www.kocaca.or.kr">www.kocaca.or.kr</a> - 기관소개>회원기관소개
* 전국 소극장 리스트 <한국소극장협회>	* 그 외, 새로운 유희공간 <지역문화진흥원>
<a href="http://smalltheater.or.kr">http://smalltheater.or.kr</a> - 회원 소극장 안내	<a href="http://www.rcda.or.kr">www.rcda.or.kr</a> - 자료실>연구보고서>2021 유희공간 문화재생사업공간 운영 실태조사 * '22.12. 업데이트 예정

○ (신청주체 및 협력주체 의무사항)

(1) 신청주체

- √ (교부신청·집행·정산) 보조금 교부 신청, 집행 및 정산의 의무 있음
- √ (차세대기획인력 동반) 공연기획·제작·홍보마케팅 등의 현장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차세대 기획자(현장경력 3년미만) 최소 1인 필수 활용
  - \* 최대 2인, 최대 10개월 인건비 편성 가능(1개년도 기준), 타 지원사업과 중복수혜 불가
  - \* 차세대기획인력 인건비의 경우, '23년 최저임금액 편성 및 집행 필수
- √ (지역 워크숍·교육) 해당 공연기획 방향(콘셉트)에 적합한 지역공연예술가, 차세대인력, 공연관객 등 대상 교육·워크숍 최소 1회 이상 운영
- √ (서면 계약 체결) 모든 계약은 서면 계약 체결 필수
  - \* 단, 기존 계약서 양식이 없다면, 문체부 제정 <공연예술표준계약서(창작, 출연, 기술지원)>, <공연예술분야 표준대관계약서> 활용 권장
- √ (참여예술가 사례) 공연 참여예술가·스태프의 적정 사례비 제공
  - \* 예산계획보다 적은 사례비 제공 또는 사례 이후 되돌려받기 등 발각 시 전액 환수조치
- √ (공연정보 아카이빙) 공연 영상·사진, 디자인·홍보물, 참여 인력 정보(창작진·배우·스태프·협력기관 등) 제출
- √ (마케팅컨설팅 참여) 지역 공연관객 개발을 위한 데이터 마케팅 컨설팅 사업 필수 참여(공연예술통합전산망 등 제공)
- √ (모니터링·평가 참여) 사업 선정 시,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참여·협조 필수

(2) 협력주체

- √ (협력주체 대상) 민간공연단체, 기획제작사, 민간공연장, 국공립공연단체·공연장, 축제 등
- √ 협력주체별 역할 및 의무사항
  - \* (예산협력) : 신청주체와 협력주체는 **자부담금 공동 조성 필수**  
(자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10~50% 설정 가능)
  - \* (공간협력) : 공간을 보유·운영하는 협력주체는 **공연 공간 대관 투자 필수**
  - \* (인적협력) : 예술가, 창제작, 행정, 기술인력 등 **인적 협력 가능**

협력주체		협력역할	예산협력	공간협력	인적협력
민간	공간 보유·운영 단체/기관		필수	필수	권장
	공연단체/기관		필수	권장	권장
국공립	공간 보유·운영 단체/기관		필수	필수	권장
	공연단체/기관		필수	권장	권장

- (지원제외대상) 모든 참여 주체 중 한 곳이라도 아래 사항에 포함될 경우, 지원대상에서 제외

구분	내용
신청 주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하나의 신청 주체가 여러 개의 사업으로 중복 신청한 경우</li> <li>• '23년 1개년 사업과 2개년 사업에 중복 신청한 경우</li> <li>• '22년 공연예술 창제작유통 협력 사업으로 선정된 단체가 동일한 공연으로 신청한 경우</li> <li>• '23년에 타 보조사업의 보조금을 받는 공연, 사업으로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</li> <li>• 국공립기관·공연단체·공연장이 신청주체로 신청한 경우</li> <li>• 고유번호증만을 소지한 공연단체, 기획제작사, 공연장, 개인예술가 등</li> </ul>
신청 주체 · 협력 주체 · 공통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연장, 공연단체의 협업 사업이 아닌 단순 대관 공연</li> <li>• 본 사업에 신청하는 공연으로 공연단체와 공연장이 이미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 등으로 지원받은 경우</li> <li>• 초·중·고·대학생만으로 구성된 단체의 공연 또는 사업(아마추어 단체 사업 포함)</li> <li>• 기획재정부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해당하는 단체</li> <li>• 문화체육관광부「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」제7조제4항(보조사업자 선정기준)에 해당하는 단체 (2022.05.16.개정)</li> <li>•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(불공정행위의 금지)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</li> <li>•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7조제2항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</li> </ul> </li> <li>• 성희롱·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li> </ul>

- (타 보조사업 중복 지원 가능 여부) 동일한 공연으로 타 보조사업과 중복하여 신청하더라도, 최종적으로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

사업명	중복 신청 가능 여부	중복 지원 가능 여부	세부내용
타 기관(재단) 보조사업 ('23 문예진흥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'23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 등)	가능	불가	동일한 공연, 사업은 중복 지원 불가
일자리 지원사업	가능	불가	동일한 인력이 지자체, 타 지원기관, 재단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

○ (예산편성) 신청주체 및 협력주체의 '협력 공연'에 대한 창제작·유통 예산 편성

※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

1. 총사업비(자부담금+보조금)의 최소 10~50%까지 자부담금으로 책정 필수

- 총 사업비(100%) = 자부담금 10~50% + 보조금 50~90%

2. 모든 신청주체와 협력주체는 자부담금 공동 조성 필수

3. 예산편성 항목 예시 (보조사업비 편성 기준 공모신청서 참고자료 참조)

목	세목	자부담금	보조금	비고
인건비	보수	- 사업 참여 인력 인건비 (본 사업 참여율로 편성)	- 차세대 기획인력 인건비(최대 10개월, 1개년 기준)	* 타 지원사업과 중복수혜 불가
운영비	일반 수용비	- 공연 창제작 관련 전문인력 사례비 - 무대, 소품, 의상 제작 전문인력 사례비 - 홍보·마케팅비 - 공연 소품비(소모품) - 회계검증수수료(필수)		*회계검증수수료 편성 필수
	공공요금 및 제세	- 상해보험료, 화재보험료, 행사보험료 등		*사업참여자 고용·상해보험 가입 필수
	임차료	- 연습실 대관비 - 무대, 조명, 음향 장비, 필요 물품 임차비 등 - 공연 유통(물품운송 및 버스) 관련 임차료		
	일반용역비	- 무대, 소품, 의상 제작비(업체 용역) - 촬영 및 영상 제작대행비(업체 용역) - 홍보대행비(업체 용역) 등		*선정 시, 본 사업의 공연영상, 사진 필수 제출
여비	국내여비	- 일비	- 숙박비, 교통비, 식비	*공무원여비규정 기준(신청서 참고자료 참조)
민간이전	고용 부담금	- 예술인 고용 보험료(사업주 부담분)		* 예술인 고용 보험 필수 가입

- 사업추진비, 회의진행경비, 단체 운영 관련 비용(소모품비, 사무기기 임차료 등), 자산취득비는 보조금 및 자부담금으로 편성·집행 불가
- 단체 대표의 경우, 주요 역할(연출, 안무, 예술감독 등)에 참여할 경우 사례비 책정할 수 있으나, 프로젝트 내 다른 역할 수행을 통한 중복 집행 불가능
- 부가세의 경우, 과세자(일반과세자)는 매입부가세액을 보조사업비(보조금, 자부담금)로 편성·집행 불가하나, 면세자(간이과세자 포함)는 매입부가세액을 보조사업비(보조금, 자부담금)로 편성·집행 가능
- 회계검증수수료 편성 및 집행 필수

\* 회계검증수수료 단가 ('22년 기준이므로, '23년 기준변동에 따라 추후 변경 가능)

총 사업비(자부담금+보조금)	회계검증수수료(원)
1억원이상 2억원미만	935,000
2억원이상 3억원미만	985,000
3억원이상 4억원미만	1,170,000
4억원이상 5억원미만	1,370,000
5억원이상 6억원미만	1,600,000
6억원이상 7억원미만	1,800,000
7억원이상 8억원미만	2,000,000
8억원이상 9억원미만	2,130,000
9억원이상 10억원미만	2,300,000
10억원이상 20억원미만	2,560,000

※ 상기 예산편성 항목 외 신청사업 관련 예술경영지원센터 사업담당자와 협의 후 편성·변경 가능

## □ 공모 신청 방법

- (공모 신청방법) 이나라도움([www.gosims.go.kr](http://www.gosims.go.kr))
- (공모 신청기간) 2022. 12. 5.(월) 10:00 ~ 12. 29.(목) 12:00(정오)까지
  - \* 이나라도움을 통해 진행하므로, **마감시간 경과 후 제출 불가**(신청서 작성, 자료 업로드 중 마감시간이 되면 자동 등록 및 완료 불가)
  - \* 필수제출서류 누락 및 오제출 시 서류심사에서 제외
  - \* 접수마감 임박하여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, 2~3일 전 접수 완료 바람
  - \* 이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문의, 장애신고 등은 '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(1670-9595) 이용'
- (신청서류) 기본 신청서류 외 추가 서류\*
  - \* 추가 서류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, 선택하여 필수 제출

기본 신청 서류	<p><b>1. 공모신청서(붙임자료 포함) 1부 (양식 제공)</b> * 붙임자료 : ① 협약 책임 이행 서약서, ②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, 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</p> <p><b>2. 예산계획안(지역 공연별 예산내역서, 엑셀양식 제공) 1부</b></p> <p><b>3. 신청주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중 1부</b> * 고유번호증 제출 불가</p> <p><b>4. 신청주체 최근 3년간('20~'22년) 공연 발표 주요 실적 증빙자료 사본 각 1부</b> * 공연 발표 주요 실적 2건 이상, 건별 증빙 1부씩(최대 3부 이내) * 공연 크레딧 등 발표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해당 부분 증빙자료(프로그램북, 리플렛 등) * 파일은 저장량 변환 후 제출 ※ 신청주체와 협력단체 간 협약체결은 1차 서류심의 선정단체에 한해 진행하며, 2차 인터뷰심의 전 '협약서' 제출 필수</p>
추가 서류	<p><b>5. 저작권 관련 이용 동의 증빙서 (자유양식)</b> * 원작에 대한 저작권 취득이 필요한 작품의 경우 필수 제출</p> <p><b>6. 안전관리계획서 (자유양식)</b> * 전국의 등록공연장이 아닌 경우 필수 제출</p> <p><b>7. 유료 공연 증빙자료 (자유양식)</b> * 전막 트라이아웃(tryout) 공연 또는 전막 쇼케이스 일 경우, 유료 공연 증빙 필수 제출 (포스터_티켓 가격 명시, 티켓 예매 또는 정산 증빙자료 등)</p>

## □ 심의 및 선정 방법

- (심의방법)
  - (사전 행정 검토) 지원 가능 대상 여부 및 첨부 서류 제출현황 검토
  - (서류심의)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장르별 심의위원의 서면 심의
  - (인터뷰심의) 협업 공연, 유통 계획, 협업 계획 등에 대한 내용을 심의위원과 심층 인터뷰 및 토론 진행
  - (예산심의) 인터뷰심의 선정단체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운용 계획 및 적절성 등을 논의하여 최종 보조금액 확정

○ (심의기준)

구분	항목	배점(안)
1. 서류심의	○ 사업목적과의 부합성	10점
	○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	20점
	○ 신청주체와 협력주체 간 협력 충실성	30점
	○ 공연의 지속적 유통·확산 가능성	40점
2. 인터뷰심의	○ 신청주체와 프로젝트 책임자의 작품 유통·확산 의지 및 책임성	30점
	○ 신청주체 및 협력주체 간 협력 충실성	30점
	○ 공연의 지속적 유통·확산 가능성	40점

○ (심의일정 및 발표 일정(안))

- (서류심의) '23년 1월 3~4주, 서류심의 진행 및 서류심의 결과발표
- (인터뷰심의) '23년 2월 2~3주, 인터뷰심의 진행(신청·협력주체, 프로젝트 책임자 필수 참여) 및 인터뷰심의 결과발표
  - \* 인터뷰 일정 개별 연락 예정
- (예산심의 및 최종 결과발표) '23년 2월 4~5주, 선정 사업 대상 예산심의 및 최종 보조금액 발표
- (결과발표방법)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단체 개별 안내
  - \* 상기 일정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□ 문의

○ (문의)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사업본부 공연예술유통팀

- (이메일) [promokams@gokams.or.kr](mailto:promokams@gokams.or.kr)

\* 더욱 정확한 정보 전달 및 응대를 위하여 이메일 문의 및 응대 진행 예정, 향후 사업설명회, FAQ 업데이트 등을 참고 바람